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직원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경기지역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통해 뿌리산업 구직자·구인기업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직원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 4. 1.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1. 모집개요

- 사업명 :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직원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 모집기간 : 사업공고일로부터 '25. 7. 31.까지
 - ※ 본 공고의 지원규모 미달 시, 추가 모집 공고 可
- 지원내용 :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직원 공동이용시설(휴게실, 식당, 샤워실 등) 개보수 비용 지원(기업당 1,000만원 이내)
 - ※ 자부담금 10% 이상, 부가가치세 기업 부담
- 지원규모 : 총 51개사
-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경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yef.or.kr) 접속
 2. 홈페이지 상단 '경총소식' → '공지사항' 메뉴 클릭
 3.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 클릭
 4. 참여신청의향서 폼(링크) URL 접속·작성 → 수행기관(경기경총) 적격여부 등 확인
 5. 적격 기업 대상, 신청서류 제출 안내 등 개별연락(수행기관(경기경총)→신청기업)
 6.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첨부 후 (skill2024@gyef.or.kr) 메일 제출
- ※참여신청의향서 폼(링크) 신청 후, 반드시 안내에 따른 관련 신청서류까지 제출 완료해야 함

2. 지원대상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경기도 소재(본사, 공장, 지사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의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아래의 **필수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고 선택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 필수 조건

▶ **25.4.1. 이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를 2인 이상 신규채용** 한 기업 (단,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은 계약직도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이상인 자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

▶ 선택 조건

- ① 경기도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 기업 [붙임2 참조]
- ②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기업

[참여 제외 사업장]

- 본 사업 참여 전에 시설 설치 관련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사업장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 공사가 불필요한 사업장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 등의 확보가 곤란한 사업장
- 무허가 건물인 경우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장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 기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으로부터 유사한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 기타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사업장

3. 지원내용

- 직원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공사 비용 90% 지원(기업당 최대 1,000만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 공사 비용의 10%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으로 함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	지원 범위
복지증진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기숙사, 체력단련시설, 보육시설, 의무시설, 도서실 등 개보수
생활필수시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탈의실 등 개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 장소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함 ■ 임차 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시설에 한하여 공사 진행이 가능하며 임차 잔여 기간 2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 연장 확인서 제출 시 공사 가능 ■ 자산으로 등록되는 가구 및 장비, 단순 집기류 구매, 조명교체 등은 지원 불가 (ex. 교육장 빔프로젝트 설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구매, 운동기구, 물품구매 등)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 지원 불가 (ex. 부지 및 건물매입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

4. 심사 및 평가

- 심사 절차
 - (1차) 서류심사를 통한 신청자격,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서류 확인
 - (2차)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평가(필요시 현장방문점검 실시)
 - (3차) 심의위원회 안전 상정 및 심의, 최종 지원 대상 사업자 선정

구분	주관	주요내용
서류심사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신청요건 충족 여부 · 평가표 기준 따라 정량평가 실시
	전문가 검토 (건축사 등)	· 공사계획 및 견적, 원가 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심의위원회 심의	심의위원회	· 서면심사 결과 및 전문가 검토의견 기반 정성평가 실시

- 평가 기준 ※ 상세기준은 서식[7] 평가표 참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합계			100+15
정량	운영기간	· 기업 사업 운영 기간	10
	일자리창출 수	· 신규채용 근로자 수	30
정성	사업의 시급성 및 사업추진 계획 평가	· 시설상태 및 개선 시급성	3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25

가 점	경기 북부지역 소재 기업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7
	소규모 사업장	· 근로자수 100인 미만 기업	5
	HR 통합체계 구축기업	· 정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업 ※ 참여사업 1개당 1점씩 최대 3점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인력장려금, 일터혁신컨설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3

○ 추진 절차 ※ 상세기준은 서식[7] 평가표 참조

모 집 · 평 가	① 모집공고	경기경영자총협회 사이트(www.gyef.or.kr) 게시
	② 참여신청 의향서신청	참여신청의향서(QR코드 링크) 작성
	③ 신청·접수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④ 평가·선정	서류 심사 및 현장방문점검(필요시)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사 업 수 행	⑤ 선정통보	선정 통보 후, 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결정 사항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설개선 공사의 준공완료 시점이 '25.10월 이내여야 함
지 원 금 액 지 급	⑥ 비용완납(기업)	모든 비용은 기업이 우선 완납, 지원금 신청 위한 지출 증빙 준비
	⑧ 지급신청(기업)	사업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지출증빙, 거래내역 등)
	⑨ 지원금 지급	현장실사, 지원금 신청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참여신청의향서 QR코드

25년 뿌리 환경개선



참여
의향서
작성
QR코드
OR
링크

<https://naver.me/5A3PhvuA>

○ 신청기업 제출서류

제출서류

1.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공장등록증명서 1부.
4.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24.2.29.~신청일 현재 기준)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7. 시설물 유지동의서 [서식2] 1부.
8. (해당시) 사업추진 동의서[서식3] 1부. *임차하여 사용 중인 공장 해당
9.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내역서 및 견적서) 1부.
10.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협약서[서식4] 1부.
11. 기업의 범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확인서[서식5] 및 동의서[서식6] 각 1부.
12. (해당시) 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증 1부.
13. (해당시_가점) 정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증명서
14. 기타 수행기관의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5. 유의사항

- 연내 사업예산 소진 시 사업모집 마감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사업 신청 취소, 사업비 반환 등의 처분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신청 기업은 사업 신청 전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 관련 법 등의 행정적, 형사적 처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사업 신청 또는 인증 이후 신청요건 변경, 기업합병, 지역 이전(경기도 외 지역)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신청 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 탈락, 인증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비, 공사업체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사업 수행기관(경기경영자총협회)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해야 함

- 신청기업은 ‘(붙임3)수의계약 배제 사유’ 를 숙지하여 공사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신청 기업은 공사금액 내 원부자재 등 견적 비용 타당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견적 타당성 검증 비용을 공사금액에 포함할 수 있음(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당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 기업에 귀속됨)
-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는 모집기간 중 접수순으로 수시 실시함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 031-8014-5475 / 031-289-34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00명 이하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2]

경기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1. 주조산업 (1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11	제철업
24112	제강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31(기반공정)	주철관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311(기반공정)	선철주물주조업
24312(기반공정)	강주물 주조업
24321(기반공정)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기반공정)	동주물 주조업
24329(기반공정)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5941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9230(기반공정)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3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931	날붙이 제조업
25932	일반 철물 제조업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42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3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2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3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4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20	유압 기기 제조업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294(기반공정)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열처리산업 (2)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1(기반공정)	금속 열처리업
29150(기반공정)	공업용로, 전기로

4. 표면처리산업 (19)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13401	숨 및 실 염색가공업
13402	직물, 편조원단 및 의복류 염색가공업
13403	날염 가공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오염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3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24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5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9(기반공정)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5922(기반공정)	도금업
25923(기반공정)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기반공정)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기반공정)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기반공정)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기반공정)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 기판 제조업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8909(기반공정)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표면처리), 아크 용접기 및 저항 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용접)
29299(기반공정)	금속 표면처리기

5. 소성가공산업 (10)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21(기반공정)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기반공정)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기반공정)	철강선 제조업
24221(기반공정)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기반공정)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기반공정)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기반공정)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기반공정)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5914(기반공정)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6. 용접산업 (7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4132(기반공정)	강관 제조업
24133(기반공정)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기반공정)	기타 1차 비철금속제조업
25121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2(기반공정)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기반공정)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기반공정)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995(기반공정)	용접봉
26224(기반공정)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기반공정)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기반공정)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기반공정)	전자카드 제조업
26294(기반공정)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기반공정)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6(기반공정)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1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2	승강기 제조업
29163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2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91	일반 저울 제조업
29192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3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4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9(기반공정)	가스 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29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41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2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71(기반공정)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
29272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기반공정)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기반공정)	화물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기반공정)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기반공정)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기반공정)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기반공정)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기반공정)	강선 건조업
31112(기반공정)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기반공정)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기반공정)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31201(기반공정)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기반공정)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기반공정)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기반공정)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기반공정)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기반공정)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기반공정)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7. 사출·프레스산업 (2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19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4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2222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51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92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8. 정밀가공산업 (4)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7301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9221	레이저가공기, 방전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9. 적층제조산업 (1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19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21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10.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산업 (7)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13992	부직포 및 펄트 제조업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기타종이가공기계

11. 로봇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2. 센서산업 (1)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1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산업 (6)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단, 비파괴검사에 한함)

1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5)

분류코드	업종명 또는 품목명
72111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 계획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수의회약 배제 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 제5장 수의회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회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회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회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회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회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회약에 한한다)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일반현황

사업신청자 현황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실무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팩스번호	
주 소			
주 업 종		주생산품	
고용보험피보험자수		명	사업자등록일
매출액	<input type="checkbox"/> 1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억 이상 5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50억 이상 1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억 이상	공장등록여부	등록 <input type="checkbox"/> / 미등록 ¹⁾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업 여부 (한 가지 이상 선택)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 해당 기업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업 확인서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 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뿌리산업 관련기업과 관련 사업업무 등으로 거래 중인 기업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 업태·종목 등에 뿌리산업 관련 업종 명시되어 있고 '24년도 뿌리산업 관련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2. 사업개요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위 치 : _____

(단위 : 천원)

1) 공장건축면적 500m²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2)	총사업비	사업규모(면적)
~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개선시설(장소)	사업규모(단위)	사업비		
		계	지원금	자부담
계				

- ※ 산출내역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 사업비의 10% 및 지원금(최대 1,000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편성
- ※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부가세는 기업 부담

추진계획(일정)

- * 사업 착수일, 완료예정일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일정 기술
-
-

기대효과

-
-

3. 동의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 동의확보 여부
 - 2년간 시설물 유지 동의여부 : 여 / 부
 - (임대·전대공장일 경우)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여부 : 여 / 부
 - ※시설물유지 동의서[서식0],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서식0] 제출

2) 시설개선 공사의 준공완료 시점이 '25.10월 이내여야 함.

2025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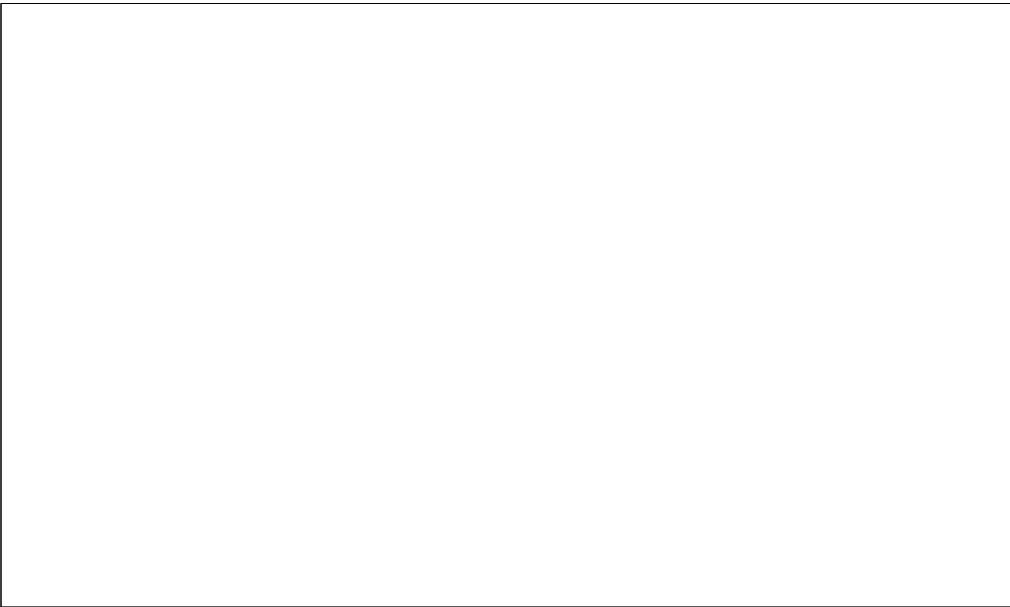
(인/서명)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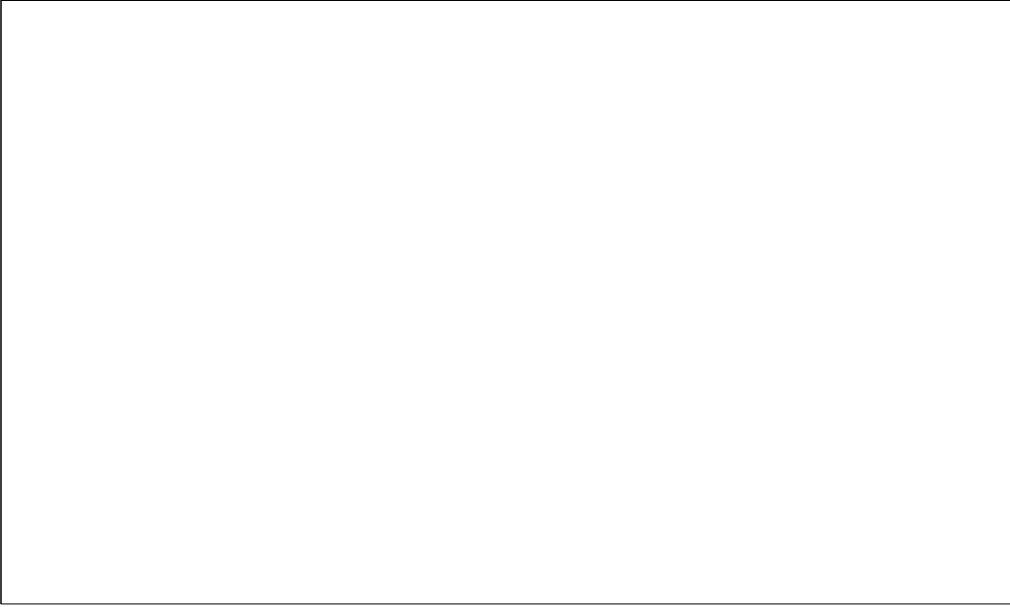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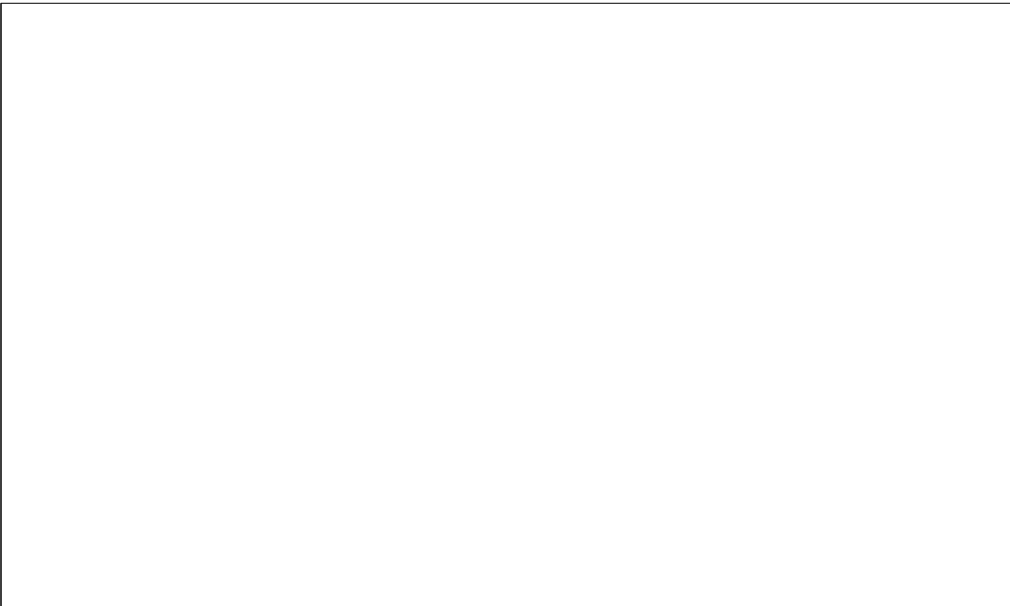
현 장 사 진 1



현 장 사 진 2



현 장 사 진 3



[서식2]

시설물 유지동의서

본 업체(대표)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고용노동부 및 경기도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할 것을 약속합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 사업 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완료 후 2년간 지원설비를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2년을 산정한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사업추진 동의서

(임대·전대공장에 한함)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장 주 소 :

본인은 (기업명 :)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로서
2025년 「경기지역 뿌리산업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의 개·보수()공사에 대해
해당 기업주 또는 기업 실무담당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향후 추진되는 공사 진행에 동의합니다.

2025. . .

동의자 연락처 :
성 명 : (인)

[서식7]

심사기준 평가표

구 분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및 배점기준	비 고
계	3개 분야 6개 항목	100 +15		
정량평가		40		
지역사회 기여 정도 (40)	▶ 운영기간	10	· 10년 이상 : 10점 · 2 ~ 5년 : 6점 · 6 ~ 9년 : 8점 · 2년 미만 : 4점	
	▶ 일자리창출 수	30	· 10명 이상 : 30점 · 2 ~ 5명 : 20점 · 6 ~ 9명 : 25점 · 2명 미만 : 15점	'24. 2. 29. 대비 신청일 현재 기준
정성평가		60		
사업의 시급성 (35)	▶ 시급성	15	· 개선이 매우 시급함 : 11 ~ 15 · 개선이 시급함 : 6 ~ 10 · 개선 불필요 : 비대상	
	▶ 시설 상태	20	· 시설 미 설치 및 매우 열악함 : 16 ~ 20 · 시설 노후·불량 및 시설이 열악함 : 11 ~ 15 · 기존시설 양호 : 비대상	
사업계획 타당성 및 구체성 (25)	▶ 사업계획의 타당성	15	· 타당하며, 구체적 : 11 ~ 15 · 타당하나, 구체성 미흡 : 6 ~ 10 · 타당성, 구체성 미흡 : 비대상	
	▶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 적정하며, 구체적 : 6 ~ 10 · 적정하나, 구체성 미흡 : 1 ~ 5 · 적정성, 구체성 미흡 : 비대상	
가 점		15		
경기 북부지역 소재 기업		7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 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소규모 사업장		5	· 근로자수 100인 미만 기업	
HR 통합체계 구축기업		3	· 정부,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참여 기업 ※ 참여사업 1개당 1점씩 최대 3점 ※※ 기업도약보장패키지, 인력장려금, 일터혁신컨 설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